

전주대학교 학교기업 운영규정

(제정 2004. 6. 24.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「학칙」 제3조제5항에 따라 학교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1.1.>

[본조개정 2020.9.1.]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교 학교기업에 적용한다. <개정 2016.1.1.>

제3조(학교기업의 설치) ①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번지로 한다.

② 학교기업의 명칭, 사업종목 및 연계학과는 [별표 1]과 같다. <개정 2016.1.1.>

[본조개정 2020.9.1.]

제2장 조직

제4조(지원조직) ① 학교기업의 행·재정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학교기업에 사업단 또는 센터를 둘 수 있다.

②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학교기업에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③ 학교기업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학교기업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

[본조개정 2022.8.31.]

제5조(교직원) ① 각 학교기업에 단장 또는 센터장 등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6.1.1., 2022.8.31.>

② 학교기업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, 조교,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③ 총장은 대학의 교직원 또는 학교기업에서 임용하는 직원(조교 및 연구원 포함)으로 하여금 학교기업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 삭제 <2022.8.31.>

제7조 삭제 <2016.1.1.>

제8조 삭제 <2016.1.1.>

제3장 현장실습

제9조(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) 학교기업을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.

제10조(현장실습) 본교 각 학교기업에서는 현장실습을 수행할 수 있으며,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을 따른다. <개정 2016.1.1., 2018.6.6., 2021.12.29.>

② 삭제 <2018.6.6.>

제4장 예산 및 회계

제11조(회계연도) 학교기업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12조(예산) ① 학교기업의 예산편성·집행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의 「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」을 따른다.

<개정 2016.1.1., 2022.8.31.>

② 학교기업은 매 학년도 경영 성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학교기업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금을 대학 발전을 위해 교비로 전출할 수 있다.

[본조개정 2022.8.31.]

제13조(회계) 학교기업에 수반되는 회계업무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,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·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하여서는 관계법령에 따른다.

제14조(보상금 지급기준) ① 학교기업 운영 성과를 결산한 결과 순이익 발생 시 순이익의 20% 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1.>

② 학교기업은 구성원에게 해당 학년도 사업성과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보상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 <신설 2018.6.6., 2022.8.31.>

③ 보상금은 전임 교직원의 경우 순이익의 7%를 초과할 수 없고, 계약직원(조교, 연구원)의 경우 순이익의 10%를 초과할 수 없으며, 참여학과 학생 장학금은 순이익의 3%이내로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6.1.1., 2018.6.6.>

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5조(준용)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. 제12조의 교육부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1.12.29.>

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2.8.31.>

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3.3.29.>

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3.6.23.>

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개정 2021.8.20., 2022.8.31., 2023.3.29., 2023.6.23.>

학교기업 현황

번 호	학교기업의 명칭	사업종목	연계학과	비 고
1	전주대학교 농생명EM환경연구센터	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(72919)	토목환경공학과 환경생명과학과	